

음악대학 졸업사정위원회 내규

시행일 : 2011.9.26.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음악대학 졸업사정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 위원은 학장, 각 학과장, 기악주임교수로 구성하고,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- ② 위원회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며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- ④ 간사는 위원회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,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음악대학 졸업사정 원칙수립 및 사정에 관한 사항
2. 음악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에 관한 사항
3. 기타 졸업사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칙)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